

#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2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2월 5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「소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소방기본법」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이 국가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 공무원 정원 규정을 정비하고,
- 나. 제로페이 서비스 안정화 및 제로페이 운영 상시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제로페이담당관 직위를 신설하고자 정원을 조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에 소속된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,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분리하여 규정함(안 제3조, 제4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)
- 나. 본청의 4급 정원을 1명 증원함(안 별표 4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, 제9조, 제9조의2 및 제21조, 「소방기본법」 제3조의2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
  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  - (2) 입법예고(2020. 1. 16. ~ 1. 20..) 결과: 의견없음

##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18,561명”을 “18,562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의 “10,415명”을 “10,416명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공무원”을 각각 “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제4조의제1항 중 “정원의”를 “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원의”로, “별표3과”를 “별표4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.

별표 2의 제목 중 “서울특별시 공무원”을 “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”으로 하고, 제3호를 삭제하며, 제4호를 제3호로 한다.

별표 3을 별표 4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,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4]

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

구 분	계	본 청	의 회 사 무 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 의 제 행정기관
<b>총 계</b>	<b>11,507</b>					
<b>정무직 계</b>	<b>2</b>					
시 장	1	1				
부시장	1	1				
<b>일반직 계</b>	<b>10,537</b>					
1급	7	6	1			
2·3급	24	18		1	3	2
3급	20	10		1	9	
3·4급	5	5				
4급	247	146	17	8	67	9
4·5급	10	10				
5급 이하 소계	10,120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04					
<b>별정직 계</b>	<b>37</b>					
4급상당	5	3	2			
5급상당 이하 소계	32					
<b>연구직 계</b>	<b>387</b>					
연구관	62	4		34	24	
연구사	325					
<b>지도직 계</b>	<b>24</b>					
지도관	2			2		
지도사	22					
<b>교육공무원 계</b>	<b>520</b>					
총 장	1			1		
교수 등	450			450		
조 교	69					

[별표 3]

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3항 관련)

구분	소방정 이상	소방령	소방경	소방위	소방장	소방교	소방사
비율	1%이내	2.2% 이내	6.3% 이내	7%이내	15% 이내	33% 이내	35.5% 이상

[별표 5]

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(제4조제2항 관련)

구 분	계	본 청	의 회 사 무 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 의 제 행정기관
<b>소방공무원 계</b>	<b>7,055</b>					
소방준감	5	4		1		
소방정	29	2		27		
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	1			1		
<b>소방령 이하 계</b>	<b>7,020</b>					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한다) 정원의 총수는 <u>18,561</u>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.) : <u>10,415</u>명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제3조(정원채정기준) ① <u>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</u></p> <p>② <u>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18,562</u> -----.</p> <p>1. ----- -----<u>10,416</u>명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정원채정기준) ① <u>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</u>----- -----.</p> <p>② <u>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</u>----- -----.</p> <p>③ <u>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.</u></p>
<p>제4조(직급별 정원) ① <u>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	<p>제4조(직급별 정원) ① <u>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정원</u>----- -----<u>별표 4와</u> -----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 <p>② <u>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과 같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2]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</p> <p>1. 일반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구분</td> <td>4급 이상</td> <td>5급</td> <td>6급</td> <td>7급</td> <td>8급·9급</td> <td>전문경</td> </tr> <tr> <td>비율</td> <td>3.5%이내</td> <td>14.5%이내</td> <td>34.5%이내</td> <td>35.5%이내</td> <td>11%이상</td> <td>1%이</td> </tr> </table> <p>2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rowspan="2">구분</td> <td colspan="2">연구직</td> <td colspan="2">지도직</td> </tr> <tr> <td>연구관</td> <td>연구사</td> <td>지도관</td> <td>지도사</td> </tr> <tr> <td>비율</td> <td>17% 이내</td> <td>83% 이상</td> <td>10% 이내</td> <td>90% 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3. 소방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rowspan="2">구분</td> <td>소방경</td> <td>소방</td> <td>소방</td> <td>소방</td> <td>소방</td> <td>소방</td> <td>소방</td> </tr> <tr> <td>이상</td> <td>령</td> <td>경</td> <td>위</td> <td>장</td> <td>교</td> <td>사</td> </tr> <tr> <td>비율</td> <td><del>1%</del>이내</td> <td>2.2% 이내</td> <td>6.3% 이내</td> <td>7%이내</td> <td>15% 이내</td> <td>33% 이내</td> <td>35.5% 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4. 별정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구분</td> <td>4급상당 이상</td> <td>5급상당</td> <td>6급상당</td> <td>7급상당</td> <td>8급·9급상당</td> </tr> <tr> <td>비율</td> <td>34% 이내</td> <td>50%이내</td> <td>10%이내</td> <td>5%이내</td> <td>1%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[별표 3]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</p>	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·9급	전문경	비율	3.5%이내	14.5%이내	34.5%이내	35.5%이내	11%이상	1%이	구분	연구직		지도직	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	비율	17% 이내	83% 이상	10% 이내	90% 이상	구분	소방경	소방	소방	소방	소방	소방	소방	이상	령	경	위	장	교	사	비율	<del>1%</del> 이내	2.2% 이내	6.3% 이내	7%이내	15% 이내	33% 이내	35.5% 이상	구분	4급상당 이상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·9급상당	비율	34% 이내	50%이내	10%이내	5%이내	1%이상	<p>[별표 2]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</p> <p>1. 일반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구분</td> <td>4급 이상</td> <td>5급</td> <td>6급</td> <td>7급</td> <td>8급·9급</td> <td>전문경력관</td> </tr> <tr> <td>비율</td> <td>3.5%이내</td> <td>14.5%이내</td> <td>34.5%이내</td> <td>35.5%이내</td> <td>11%이상</td> <td>1%이내</td> </tr> </table> <p>2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rowspan="2">구분</td> <td colspan="2">연구직</td> <td colspan="2">지도직</td> </tr> <tr> <td>연구관</td> <td>연구사</td> <td>지도관</td> <td>지도사</td> </tr> <tr> <td>비율</td> <td>17% 이내</td> <td>83% 이상</td> <td>10% 이내</td> <td>90% 이상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 제&gt;</p> <p>3. 별정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구분</td> <td>4급상당 이상</td> <td>5급상당</td> <td>6급상당</td> <td>7급상당</td> <td>8급·9급상당</td> </tr> <tr> <td>비율</td> <td>34% 이내</td> <td>50%이내</td> <td>10%이내</td> <td>5%이내</td> <td>1%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[별표 4]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</p>	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·9급	전문경력관	비율	3.5%이내	14.5%이내	34.5%이내	35.5%이내	11%이상	1%이내	구분	연구직		지도직	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	비율	17% 이내	83% 이상	10% 이내	90% 이상	구분	4급상당 이상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·9급상당	비율	34% 이내	50%이내	10%이내	5%이내	1%이상
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·9급	전문경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3.5%이내	14.5%이내	34.5%이내	35.5%이내	11%이상	1%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연구직		지도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17% 이내	83% 이상	10% 이내	90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소방경	소방	소방	소방	소방	소방	소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이상	령	경	위	장	교	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<del>1%</del> 이내	2.2% 이내	6.3% 이내	7%이내	15% 이내	33% 이내	35.5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4급상당 이상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·9급상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34% 이내	50%이내	10%이내	5%이내	1%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·9급	전문경력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3.5%이내	14.5%이내	34.5%이내	35.5%이내	11%이상	1%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연구직		지도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17% 이내	83% 이상	10% 이내	90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4급상당 이상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·9급상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34% 이내	50%이내	10%이내	5%이내	1%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

## 현 행

구 분	계	본청	의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 의 제 행정기관
<b>총 계</b>	<b>18,561</b>					
<b>정무직 계</b>	<b>2</b>					
시 장	1	1				
부시장	1	1				
<b>일반직 계</b>	<b>10,536</b>					
1급	7	6	1			
2·3급	24	18		1	3	2
3급	20	10		1	9	
3·4급	5	5				
4급	<b>246</b>	<b>145</b>	17	8	67	9
4·5급	10	10				
5급 이하 소계	10,120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04					
<b>별정직 계</b>	<b>37</b>					
4급상당	5	3	2			
5급상당 이하 소계	32					
<b>연구직 계</b>	<b>387</b>					
연구관	62	4		34	24	
연구사	325					
<b>지도직 계</b>	<b>24</b>					
지도관	2			2		
지도사	22					
<b>소방공무원 계</b>	<b>7,055</b>					
<b>소방준감</b>	<b>5</b>	<b>4</b>		<b>1</b>		
<b>소방정</b>	<b>29</b>	<b>2</b>		<b>27</b>		
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	1			1		
<b>소방령 이하 계</b>	<b>7,020</b>					
<b>교육공무원 계</b>	<b>520</b>					
총 장	1			1		
교수 등	450			450		
조 교	69					

<신 설>

<신 설>

## 개 정 안

구 분	계	본청	의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 의 제 행정기관
<b>총 계</b>	<b>11,507</b>					
<b>정무직 계</b>	<b>2</b>					
시 장	1	1				
부시장	1	1				
<b>일반직 계</b>	<b>10,537</b>					
1급	7	6	1			
2·3급	24	18		1	3	2
3급	20	10		1	9	
3·4급	5	5				
4급	<b>247</b>	<b>146</b>	17	8	67	9
4·5급	10	10				
5급 이하 소계	10,120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04					
<b>별정직 계</b>	<b>37</b>					
4급상당	5	3	2			
5급상당 이하 소계	32					
<b>연구직 계</b>	<b>387</b>					
연구관	62	4		34	24	
연구사	325					
<b>지도직 계</b>	<b>24</b>					
지도관	2			2		
지도사	22					
(삭제)						
<b>교육공무원 계</b>	<b>520</b>					
총 장	1			1		
교수 등	450			450		
조 교	69					

[별표 3]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 
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3항 관련)

구분	소방정 이상	소방령	소방경	소방위	소방장	소방교	소방사
비율	1%내	2.2%내	6.3%내	7%이내	15%내	33%내	35.5%이상

[별표 5]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 
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(제4조제2항 관련)

구 분	계	본청	의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 소	합 의 제 행정기관
<b>소방공무원 계</b>	<b>7,055</b>					
<b>소방준감</b>	<b>5</b>	<b>4</b>		<b>1</b>		
<b>소방정</b>	<b>29</b>	<b>2</b>		<b>27</b>		
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	1			1		
<b>소방령 이하 계</b>	<b>7,020</b>					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총정원이 18,561명에서 18,562명으로 총 1명 증원함에 있어  
관련 인건비 발생 (서기관 +1명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1호

3. 미첨부 사유 :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5억원 미만

4. 작성자 :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문제호(☎ 2133-6724)